

# 2023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

톰슨로이터코리아

2023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 LAWnB IP Exclusive Report 는 로앤비의 [로펌 리포트], [학회논문], [세계법제동향] 및 [유럽법제동향] 콘텐츠를 엮어 발행하였습니다. 로펌리포트는 각 로펌의 동의 하에 본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전제 및 상업적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LAWnB IP Exclusive Report:

# 2023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

2023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동향 LAWnB IP Exclusive Report 는 국내 및 해외 동향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AI 규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챗 GPT 같은 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에서 이미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처럼, 국내에서도 AI 의 윤리적 이슈, 신뢰성 향상, 그리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같은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국제중재의 관련 주체들에게 AI 의 활용에 대한 표준 제시, EU 의회의 AI 법안 수정 내용 등의 해외동향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AI 의 윤리, 신뢰성 및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부처들은 AI 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 및 신뢰성 기준 설정, 그리고 관련 서비스 및 기술의 보안과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 컨퍼런스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트렌드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EU 의 규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AI 산업의 발전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AI 정책과 규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법적 규제가 활발하게 변화되는 만큼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혹은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LAWnB IP Exclusive Report 에 포함된 콘텐츠는 로앤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를 많은 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게재를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통스라이터코리아

### 정보제공 동의 로펌 (가나다순)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올촌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 화우	

### LAWnB Legal Essential Report Vol.22

LAWnB IP Exclusive Report: 2023 Domestic and International AI Regulatory and Policy Trends  
Thomson Reuters  
www.lawnb.com



# Table of Contents

## LAWnB IP Exclusive Report: 2023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협상안 가결 .....	4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 .....	5
국제중재에서 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동향 .....	9
EU AI 법안의 EU 의회 수정안 주요내용 .....	12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현황 및 정책 동향 .....	16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의 입법 상황 .....	19
EU의 포괄적 AI 법, 2025년 발효예정일 앞두고 최종협상에 들어감 .....	20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 단계에서의 저작권 쟁점: 영국 TDM 면책규정과 유럽연합 DSM 지침의 TDM 면책규정 중심으로 .....	21
생성형 AI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	22
미국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에 대한 고찰 .....	23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고찰 .....	25



## 세계법제동향

#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협상안 가결

유럽연합 법제동향

2023.09.04

### ● 전문

2023년 6월 14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인공지능 법안'의 협상안이 가결되었다. 유럽연합은 혁신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이 법안을 마련하였다. 규제 대상은 유럽연합 회원국 및 역내 기업이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을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 등 4단계의 위험도로 분류하고, 이 중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3단계에 대해 단계별 규제를 부과한다. 특히 제 5 조는 사람들의 안전, 생명, 권리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유해한 인공지능을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단계로 분류해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럽연합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인공지능의 예시로 특정 취약군에 대한 인지 행동 조작(아이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유도하는 음성 인식 장난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 행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점수 평가, 안면 인식과 같은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가 감독 기구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관할 당국을 지정해 이 법의 적용과 시행을 감독하고, 회원국 대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유럽 인공지능 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0 만유로(한화로 약 429 억원), 연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더해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내에 관련 벌칙 규정을 도입하여 이 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이 법안은 유럽의회·유럽연합 이사회·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의 3자 협상을 통한 최종안 도출 단계에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저작물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 해당 로앤비 세계법제동향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세계법제동향

#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

국제연합

2023.08.16

### ● 전문

인공지능(AI)은 의료, 교통, 금융, 노동, 제조,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하여 성장하며 이용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큰 편리를 가져다주는 반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오작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저작권 침해 등의 부작용 역시 공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AI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 대만

대만은 행정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디지털부, 문화부 등과 부처 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광고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AI 관련 규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 9월에 「인공지능 기본법」 법률안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안에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 원칙 등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 러시아

AI 분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나 법률은 없으나 현재 "2024년 AI 기술 및 로봇공학 분야의 규제 개발에 관한 구상"을 공식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구상은 신기술의 적극적인 개발, 세계에서 러시아의 선도적인 위치 보장,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성을 가지며 AI 시스템의 이용 시 법적책임, 정보의 보호, 개발자를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21-2025 AI 로드맵(AI-RAMP)"을 발표하여 인재 개발, 연구 개발, 산업 채택 및 거버넌스라는 네 영역에 초점을 맞춰 말레이시아를 AI 지역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의 책임에 공정성, 안전성, 윤리성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7일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AI 사용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 미국

미국은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 13859 호로 발표한 "미국 인공지능 구상" 이후, 「생성적 적대 신경망 출력물 확인법」과 「국가 인공지능 구상법 2020」을 제정하여 AI 연구개발과 훈련 지원을 중심으로 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전담조직으로 백악관 과학기술처에 국가인공지능구상실을 신설하였다. 그 밖에 연방정부의 AI 사용에 대하여는 행정명령 제 13960 호, 「정부인공지능법 2020」, 「조달인력의 인공지능 역량강화법」, 「미국인공지능진흥법」 등의 법령을 두고 있다.

### 베트남

베트남은 현재 AI 규제 관련 법률은 아직 없으나 2021 년 정부 총리의 결정 제 127/Qđ-TTg 호에 의한 AI 연구·개발 및 응용 국가전략에 따르면 2030 년까지 AI 를 베트남의 중요한 기술분야로 발전시켜 아세안 혁신허브 4 위권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다방면의 AI 기술 보급 확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각 부처에게 지식재산권, 사생활 및 인권 보호 등 관련 법률 제정, 제도 구축과 같은 도전과제가 주어졌다.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AI 규제를 위한 법률은 없으나 2030 년까지 세계 AI 국가순위 15 위 진입을 목표로 2020 년에 “데이터·AI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Data & AI)”을 발표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정부투자 확대를 통한 AI 전문인력·스타트업 양성 추진과 이 분야의 기술, 정책 및 규제, 연구혁신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계획을 실행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AI 개발추세에 따라 이 분야의 보안, 윤리, 책임, 규제에 대한 국가 및 기관 차원의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현재 AI 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산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2019 년 1 월 발표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Model AI Governance Framework)”를 통해 인간 중심적이고 설명 가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간 부문의 AI 관리체계, 윤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알제리

알제리는 교육, 연구 등의 전 분야에 걸쳐 AI 역량을 확대하고 여러 분야에 최신 AI 기술을 적용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 년 1 월 18 일 “2020-2030 AI 에 관한 연구 및 혁신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으며, AI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국립인공지능학교 창설에 관한 대통령령」을 2021 년 8 월 22 일 제정하였다. 아직 관련 법안이나 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 영국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2023 년 3 월 AI 백서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을 발표하였다. 백서는 혁신을 억제할 수 있는 강압적인 법안의 도입을 피하고, AI 규제에 적용 가능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며, 새로운 단일 규제 기관을 만들어 전권을 부여하는 대신 기존 관련 기관이 상황별로 맞춤형 접근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은 AI 의 위험에 국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3 년 말 첫 글로벌 AI 안전 정상회의(global AI safety summit)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AI 감시기구를 런던에 유치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현재 AI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 법률은 없으나 AI 기술 개발 장려를 위하여 "국가 AI 전략 2020-2045"를 마련하였다. 이는 다양한 부문에서 AI 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 AI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 및 활용을 관리하는 규정 마련을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정보통신법」 개정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적 설비에 대하여 규제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생성형 AI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 법률은 없으며, 현시점에서 법률 제정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9년 내각부에서 "인간중심의 AI 사회원칙"을 책정한 이후 각 부처에서 실천적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또한, 생성형 AI의 진화 및 보급에 따라 내각부는 2023년 5월 AI 업계 지식인으로 구성된 "AI 전략회의"를 발족하고, AI의 이용 및 리스크, 개발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관계부처의 실무자로 구성된 "AI 전략팀"이 "AI 전략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AI와 관련된 여러 과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결성되어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중국

중국은 국가발전 5개년 계획 "중국표준 2035"에 "중국형 과학기술표준의 세계화"를 장기목표로 명시하였으며, 중점과학기술에 AI 기술을 포함하였다. 이와 관련한 여러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잠정 관리 방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령은 2023년 7월 10일 공포되었고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AI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의 허용 범위, 준수 의무, 위반 시 조치, 벌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제 C-27호를 지난 2022년 6월 16일 의회 하원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AI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AI 규제 전담 부서 신설 △AI와 관련한 불법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있다.

##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디지털 분야를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9년 디지털 관련 전략 계획을 위한 "국가디지털계획(PNN)"을 작성하였다. 인프라 현대화, 콘텐츠 접근 및 보안, 어플리케이션 사용, 거버넌스 및 규제에 네 가지 전략축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의 디지털 분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된 이 계획에는 AI 시스템 운영 기술에 필요한 정보기술, AI 윤리에 관한 특정 기술에 관한 전략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태국

태국은 아직 AI 규제 관련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경제 성장 촉진, 국가 경쟁력 제고, 인재 개발, AI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2022년 7월 26일 "AI 적용을 위한 사회, 윤리, 법률 및 수칙 측면에서의 준비"를 포함하는 5가지 전략과 15가지 작업 계획으로 구성된 "태국 개발을 위한 국가 AI 실행 계획(2022-2027)"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있다.

## 페루

페루는 2023년 7월 23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총 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3 조에서 AI를 "신흥기술로써,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기여하며, 혁신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로 정의했다. 또한 제 4 조에서는 총리실과 페루 디지털정부혁신부를 AI 및 신기술의 개발과 홍보를 지휘·평가·감독하는 책임기관으로 규정하였다.

### 필리핀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디지털화 및 인프라,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규제라는 4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둔 "국가 AI 로드맵(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oadmap)"을 2021 년 5 월 발표하였다. 특히,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AI 및 데이터 중심의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및 성장을 위한 지원,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검토 및 변화, AI 및 데이터 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물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 해당 로앤비 세계법제동향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제중재에서 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동향

법무법인(유) 태평양

김준우, 한창완

2023. 9. 14

**bkl** 법무법인(유)태평양

## 국제중재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국제중재절차에서 AI의 활용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법적 인식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복잡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국제중재 분야에서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초기 단계로, 관련 주체들에게 AI의 활용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초안이 현재 추상적인 원칙에 중점을 둔 것처럼, 실제 중재 실무에서 AI의 활용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중재 관련 기관, 법률 전문가, 기술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활용 방안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제중재절차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난 몇년간 학계와 실무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중재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법률 번역, 리서치, 문서제출 등과 관련하여 AI를 활용하기 시작하거나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분쟁당사자, 대리인, 중재판정부 및 사무국은 자신의 업무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하여 AI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큼니다.

실리콘밸리 중재조정센터(Silicon Valley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SVAMC”)는 2023. 8. 31.(미국 시각) 국제중재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초안(“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였고, 다른 사무기관들 역시 자체 규칙 제정을 시도하거나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에서 세계적인 통일적 규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이드라인 초안이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I. AI의 정의

가이드라인 초안은 AI를 “자연언어의 이해, 복잡한 의미론적 패턴의 인식, 인간과 같은 결과 도출 등 통상 인간의 인지능력과 연관된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computer systems that perform tasks commonly associated with human cogni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이 이렇게 폭넓게 AI를 정의한 이유는 현존하는 AI 체제 뿐만 아니라 향후 등장하는 AI 체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II. 모든 국제중재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항목

### 1. AI 활용, 한계 및 위험에 대한 이해 (Guideline 1)

가이드라인 초안은 분쟁당사자와 그 대리인들로 하여금 해당 절차에

적용되는 윤리규범이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AI 활용에 따른 결과물을 정확하게 제시할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활용에 따른 결과물이 부정확하거나 잘못이 있다면 이를 활용한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 설명서는 분쟁당사자나 대리인이 일정한 법적 작업을 AI 에게 위임하면서 그 결과물의 정확성을 검토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면서, 분쟁당사자나 대리인이 AI 활용에 따른 결과물의 정확성을 검토하여야 할 윤리적 또는 직업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중재절차의 온전성과 증거의 존중

가이드라인 초안은 분쟁당사자, 대리인, 전문가로 하여금 중재절차의 온전성(integrity)을 저해하거나 중재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AI 를 사용할 수 없고, AI 를 활용하여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거의 진실성을 저해하거나 중재판정부나 다른 당사자에게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 설명서는 AI 의 활용으로 인하여 중재절차의 온전성과 증거의 진실성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IV. 중재인에게 적용되는 항목

### 1. 의사결정 위임의 금지

가이드라인 초안은 중재인이 자신의 역할, 특히 의사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AI 에 위임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 설명서는 정보를 관리 및 분석하기 위해 AI 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중재인의 역할 특히 의사결정까지 AI 에게 위임할 수 없고, AI 활용에 따른 결과물을 중재인이 직접 검토하여 쟁점에 관한 중재인의 판단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적법절차 보장

가이드라인 초안은 중재인이 분쟁당사자에게 적절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AI 를 통해 취득한 정보(AI-generated information)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 설명서는 AI 활용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중재인이 사건을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AI 를 통해 취득한 정보가 무엇인지 분쟁당사자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서는 AI 활용에 따른 결과물의 신뢰성을 중재인이 독자적이고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V. 마무리하며

가이드라인 초안 서문은 가이드라인이 국제중재에서 AI 활용을 위한 원칙 위주의 프레임워크가 되기를 의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 초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대체로 추상적인 원칙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그대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실제 중재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사건별로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특히 중재판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원칙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할 재량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 다른 중재규칙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가이드라인 내용이 간략하고 추상적이지만, 향후 가이드라인의 실제 작동 모습, 관련 실무의 정립, 관련 AI 기술의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사정이 확인된 후 이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이 수정되거나 관련된 규칙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U AI 법안의 EU 의회 수정안 주요내용

법무법인(유) 태평양

김도엽, 마경태

2022. 5. 19

## bkl 법무법인(유)태평양

### 파운데이션 모델과 중소기업 주요 변경점

“유럽연합(EU) 의회의 두 위원회가 최근 인공지능(AI)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새로운 규제입니다. 해당 모델의 공급자는 기술 문서와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생성 AI를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의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AI의 활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 AI는 위법한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 AI 시스템을 배포하는 자에게는 감독 의무와 기본권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중요한 변경 중 하나로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관한 규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규제에 따르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은 중소기업에게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 EU 법안은 6월 중순에 투표될 예정이며, 투표 후 3차 협의 과정을 거쳐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에 최종 입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11일 유럽연합(EU)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Internal Market Committee)와 시민자유위원회(Civil Liberties Committee)는 'EU 인공지능(AI) 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a European Approach for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수정안(이하 "EU 의회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U는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에서 AI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2년 12월 EU 각료 이사회에서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EU 의회에서 발표한 수정안은 AI 법안에 대한 가장 최근까지의 논의가 포함된 것으로서, GPT 모델로 대표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고, AI의 정의와 고위험 AI 시스템의 목록이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 I. EU 의회안의 주요 변경사항

기존 EU 집행위원회에서 마련한 초안과 비교하여 EU 의회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표 1> EU 의회안 변경사항

내용	주요 변경사항
파운데이션 모델*	-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위험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모델 위험 관리 및 기술문서 제공 등의 엄격한 요구사항 규정 - 생성 AI에 사용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 위법한 콘텐츠 생성 방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정보 공개 의무 등 부과
AI 시스템의 정의	- AI 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 목표를 위해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또는 결정과 같은 결과를 생성하는 기계 기반(machine-based) 시스템"으로 정의
고위험 AI 시스템 범위	- 고위험 AI 시스템 목록에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소셜 미디어의 추천시스템' 등 추가 - 고위험 AI 시스템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고위험으로 간주
금지된 위험 AI 시스템 범위	-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전면 금지 - 금지되는 AI 시스템 목록에 '민감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스크래핑을 통해 안면인식 DB를 구축하는 시스템' 등 추가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의 의무	- 고위험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에게 기본권 영향평가 수행 등 강화된 의무 부여
중소기업 불공정 계약 규제	- 중소기업(SME) 또는 스타트업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조항 추가
이용자 권리	- 이용자에게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설명요구권 등 권리 부여
벌칙	- 금지되는 AI 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6% 또는 최대 3,000만 유로에서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7% 또는 최대 4,000만 유로로 상향 조정
유예기간	- 법 통과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대규모 데이터로 사전 훈련된 AI 모델로서 출력력이 범용적이어서 다른 다양한 시스템 개발의 기초로 쓰

이하에서는 우선 EU 의회안에서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되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고, 이어서 AI 시스템을 공급받아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의무사항과 불공정 계약 규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II.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조항 신설

### 1. 파운데이션 모델의 정의 및 공급자의 의무

EU 의회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EU 의회안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존의 AI 위험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공급자(provider)가 준수해야 할 의무 조항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EU 의회안에 따르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에 의해 학습되고, 출력의 범용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합니다. EU 의회안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공급자에게 아래 <표 2>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 2> 파운데이션 모델 공급자의 의무

구분	내용
모델 위험 관리	모델이 건강, 안전, 기본권, 환경, 민주주의, 법령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식별·완화하고, 이를 독립된 전문가 검증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입증
데이터 관리	데이터 출처 및 편향 검증 등 적절한 관리 조치가 이루어진 데이터셋 사용
모델 신뢰성 확보	모델의 성능, 예측가능성, 설명가능성, 수정가능성, 안전성 및 보안이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도록 모델을 설계·개발하고, 이를 독립된 전문가가 수행하는 모델 검증 절차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해 평가
환경 보호	에너지·자원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 및 시스템의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가능한 표준을 사용하여 모델을 설계·개발 (단, 이 의무는 향후 관련 표준 발표 후 적용)
정보 제공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급받아 활용하는 하위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기술문서와 이해하기 쉬운 사용 지침을 작성
품질관리 시스템	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등록	공급자의 이름·주소·연락처 정보, 모델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모델의 기능 및 한계, 모델 성능 등의 정보를 EU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여 등록

이에 따르면, 파운데이션 모델의 공급자는 자신으로부터 모델을 공급받아 활용하는 하위 사업자의 서비스 내용까지 고려해서 모델에 대한 기술문서와 지침을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2. 생성 AI에 사용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추가 의무

GPT 모델과 디퓨전(Diffusion) 모델과 같이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에 사용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공급자는 위 <표 2>의 사항과 함께 추가 의무를 부담합니다. 생성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AI 시스템 활용 사실을 알려야 하고, 위법한 콘텐츠 생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개발·학습해야 합니다.

최근 대량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학습데이터로 구축하여 학습하는 생성 AI 서비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다투는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U 의회 AI 법안은 생성 AI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성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학습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III.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에 대한 의무 강화

#### 1.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의 감독 의무

AI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은 시스템의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EU 의회안은 고위험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에게 감독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는 자신이 시스템에 대하여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사람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은 적절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나아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견고성 및 보안 수준이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 2. 기본권 영향평가 수행 의무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기본권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본권 영향평가 항목에는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 시 예상되는 기본권에 대한 영향, 취약계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인간에 의한 감독 방안을 포함한 AI 거버넌스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권 영향평가 수행 시 정부 감독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향평가 과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는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IV.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계약에 대한 규제 조항 신설

EU 의회안은 중소기업(SME) 또는 스타트업(이하 “중소기업등”)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규제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AI 시스템에 이용되는 도구·서비스·구성요소의 공급에 관한 계약조건, 계약 위반 또는 종료에 대한 계약조건이 중소기업등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그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등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계약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조건에 대하여 중소기업등이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면, 계약조건이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V. 시사점

EU 의회안은 6 월 중순경에 EU 의회의 투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EU 의회, 집행위원회, 각료 위원회는 AI



법안의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3자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EU 의회안의 내용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의회안은 아직 최종 입법안이 아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는 점과 2021년 초안의 규제 내용을 발전하는 AI 생태계에 맞춰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AI 시스템의 공급자에서 배포자 및 최종 사용자까지 이어지는 공급망(supply chain)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공정 계약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EU AI 법안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에 최종 입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현황 및 정책 동향

법무법인(유한) 세종

강지현, 윤호상, 황정현, 강신욱

2023. 6. 29

**SHIN & KIM**  
법무법인(유)세종

## 한국 인공지능 규제와 윤리 동향

“한국에서는 인공지능(AI)에 관한 윤리, 신뢰성, 그리고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부처들은 AI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 및 신뢰성 기준 설정, 그리고 관련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보안과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논의하고 마련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미국과 EU에서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 역시 AI의 윤리와 신뢰성 강화, 그리고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의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AI 규제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챗 GPT의 출현을 계기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EU에서 AI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역시 인공지능 윤리, 신뢰성 강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들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각 주요 부처들의 동향과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주요부처 동향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23. '인공지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주요국(한, 영, 독, 일)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국제기구(EU, OECD),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인공지능 규율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위 컨퍼런스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①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과 ②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및 ③인공지능(AI)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을 담은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①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가 중요, 사업자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서비스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사후적 조치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② 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인공지능(AI)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구현되기 때문에,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상황별로 원칙을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

#### ③ 인공지능(AI)의 리스크를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

-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유형별·시안별 민감성과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모델 구축 필요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해 OECD, EU 등의 인공지능 권고안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을 수립하고, 윤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을 마련(‘22.2)한 바 있습니다.

\* (10 대요건) ①인권 보장, ②프라이버시 보호, ③다양성 존중, ④침해금지, ⑤공공성, ⑥연대성, ⑦데이터 관리, ⑧책임성, ⑨안전성, ⑩투명성

\*\* (자율점검표) 윤리기준 10 대 핵심요건 기반 / (개발안내서) 기술적 구현 가능한 4 개 핵심요건 기반

· 최근에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방안(23.5)’을 발표하면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 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원칙을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9 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23.5)’ 개최, AI 분야별 대표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23.6),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보안 위협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23.6) 개최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3)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21.6)’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22.4).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 컨퍼런스는 인공지능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보호 이슈를 논의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2019 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 (4) 중소기업벤처부

· 중소기업벤처부는 샘 알트만 오픈 AI 대표와 주요 임원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6.9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관련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OpenAI 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 주요 법안 발의 현황

법안명	발의일	주요내용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a href="#">(18726)</a>	2022.12.7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법으로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한해 규제하겠다는 우선 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함. 다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하여 사전고지의무와 신뢰성확보 조치 의무를 부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a href="#">(20001)</a>	2023.2.14.	인공지능 기반 추천서비스 제공 시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함
인공지능책임법 <a href="#">(20353)</a>	2023.2.28.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고위험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의 책무를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a href="#">(20130)</a>	2023.2.20.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고리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 <a href="#">(20898, 21075, 20799)</a>	2023.3.27 등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 활용 시 피채용인에게 사전고지의무를 부여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a href="#">(22180)</a>	2023.5.2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저작권법 개정안 <a href="#">(22537)</a>	2023.6.8.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인공지능 기술의 저작물 활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함
공직선거법 개정안 <a href="#">(22569)</a>	2023.6.12.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허위정보나 명령을 입력하여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논평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a href="#">(22730)</a>	2023.6.19.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명시

### 3. 시사점

- 기본적으로 정부는 AI 산업 육성과 관련 생태계 진흥에 초점을 맞춰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것으로, 미국·중국 등이 AI 기술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규제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면 'AI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존재합니다.
- 그러나 미국과 EU에서 AI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부처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공지능과 관련한 규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의 입법 상황

## Aktueller Stand des Gesetzgebungsverfahrens (AI-Act)

유럽법제동향

박희영(법학박사, 독일막스플랑크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2023년 09월

### ● 개관

AI의 사용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AI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전자증거개시, 예측 분석, 문서 및 계약 분석, 전문가 시스템, 챗봇 등에 사용될 수 있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인간 전문가가 볼 수 없는 법률 사건의 패턴과 추세를 파악하여 법률적 이해를 깊게 하고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 의사 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I 시스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대표적이고 편견이 없어야 한다. 챗봇은 고객의 질문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변호사와 판사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더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든 당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간소화할 수 있다. 또한 챗봇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빠르게 고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I, 특히 생성 AI는 법률 업계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시스템의 사용은 법률 분야에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향후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어려운(법적) 질문을 제기한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에 관한 최신의 입법 동향을 소개한다. EU의 AI 규제에 관한 현재 진행 상황, 특히 이사회와 EU 의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 해당 로앤비 유럽법제동향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EU 의 포괄적 AI 법, 2025 년 발효예정일 앞두고 최종협상에 들어감

The EU' Comprehensive AI Act enters Final Negotiations before its expected effective date in 2025.

유럽법제동향

박형욱(지적재산권법 법학전문박사)

2023 년 08 월

## ● 개요

EU 의 AI 법은 인공지능 (AI)에 대한 EU 최초의 규정이며, AI 사용에 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법이다. EU 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AI)을 규제하여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한다. 예컨대 AI 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더 안전하고 깨끗한 운송, 더 효율적인 제조, 더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 많은 이점을 창출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EU 의 AI 법 제정 진행 상황에 대하여 2021 년 EU 집행위원회의 AI 법 초안과 2022 년 EU 각료 이사회의 AI 법 추가 초안 그리고 2023 년 EU 의회가 채택한 AI 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생성형 AI 의 주요 저작권 쟁점이 최종 AI 법에 포함 될지 여부도 살펴본다.

> 해당 로앤비 유럽법제동향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 단계에서의 저작권 쟁점: 영국 TDM 면책규정과 유럽연합 DSM 지침의 TDM 면책규정 중심으로

Copyright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models: focusing on the UK TDM exemption and the TDM exemption in the EU DSM Directive

유럽법제동향

박형욱(지적재산권법 법학전문박사)

2023년 08월

## ● 개요

유럽연합(EU) 각료 이사회는 2023년 6월 14일 EU 의회가 채택한 AI 법안의 수정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2023년 말까지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수정안에는 “범용 AI에 대한 의무” 항목에 Chat GPT와 같은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generative AI) 시스템의 투명성 요구 사항과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의 자세한 요약도 공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인 쟁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최종 AI 법이 확정되면 생성형 AI의 저작권쟁점 포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지만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생성형 AI 관련된 주요 저작권 쟁점은 크게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 단계에서의 쟁점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결과물과 관련된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하여 TDM 면책규정과 유럽연합의 DSM 지침 상 TDM 면책규정 중심으로 최근 관련된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해당 로앤비 유럽법제동향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생성형 AI 의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Necessity of regulation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generative AI:  
Focusing on Large language Models conversational A.I. services (LLMs AI)**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제 35 권 2 호>

양은영(Eunyoung Yang)

2023 년 06 월

## ● 초록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이래 AI 는 광속적인 발전을 하며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22 년 출시된 챗 GPT-3 의 단기간 확산으로 생성형 AI 의 개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공지능이 인간만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창작의 영역에서까지 인간을 능가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진보한 기술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그리고 특히 텍스트를 중심으로 대화나 검색엔진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모델에 기반한 AI 의 현주소를 분석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LLMs AI 는 대량의 데이터에 의존하다 보니 데이터편향, 허위정보, 정보오용, 데이터 환각 등 학습데이터 문제와 학습·생성·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범죄에의 이용 등 불법적 문제, 그리고 광범위한 활용 영역에 따라 디지털 디바이드, 고용시장의 변화 등의 파생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의 기술 개발에 있어 인간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기술윤리 준수와 책임감 있는 자체 감독을 강제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윤리에 대한 홍보·교육·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생성자인 AI 와 개발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책임감 있는 개발·생성·이용 활동을 하도록 개인정보, 저작권, 콘텐츠 관련 법령과 AI 기본법을 검토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강력한 직접규제조항이나, 저작권접권·보험의무화 등 간접책임을 명문화한 입법규제를 제안한다.

> 해당 로앤비 학회논문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에 대한 고찰

## Study on the U.S.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

미국헌법학회 / 미국헌법연구 <제 34 권 1 호>

홍석한

2023 년 04 월

### ● 초록

최근 유럽연합과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범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도 점차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에 규제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은 이러한 경향을 드러낸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2023 년 3 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에서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을 통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미국의 규범적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의 법제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은 “2019 알고리즘 책임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특히, 동 법안은 알고리즘 활용이 널리 확대됨에 따라 오류나 편향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 영향평가라는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관련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개발, 배포하는 기업에 대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거래위원회에 대해 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미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타 자동화시스템에 대해 투명성과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는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데이터의 결함이나 편향성, 기술의 안전성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면 전문성과 구체성이 요구되며, 성질상 사후적 대응을 통해서 이미 발생한 피해를 원상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규제기관은 그러한 알고리즘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인지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업에 대해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알고리즘으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규제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를 비롯하여 알고리즘 문제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기 불가능 하거나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그러한 위험을 차단하고, 위험성 및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의 접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사전적으로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등이 이러한 사전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의 정도, 그 개발 및 활용 주체의 특성에 따라 영향평가 의무 적용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영향평가가 실제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며, 감독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영향평가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해당 로앤비 학회논문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hina's Generative AI Regulations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과학기술과 법 <제 14 권 1 호>

이상우(Sang-Woo Lee)

2023 년 06 월

### ● 들어가며

2023년 4월 11일, 중국 내 인터넷 콘텐츠 유통·관리에 관한 정책 시행 및 관련 법 료체계의 구축과 유관부서의 관리·감독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 互联网信息办公室)<sup>1)</sup>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방법(의견수렴안)(生成式人工智 能服务管理办法(征求意见稿))'(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5월 10일까지 동 방법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sup>2)</sup> ChatGPT3)가 촉발한 생성형 (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규제 논의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기민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sup>4)</sup> 본고의 한정된 지면을 통해 생성형 AI의 기술적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동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정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Chat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scale language model: LLM)의 한 종류이다.<sup>5)</sup> LLM은 수백만 개 이상의 말뭉치(corpus)로부터 학습된 AI 언어 모델로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 세트를 통해 학습하여 다양한 언어와 문맥을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다.<sup>6)</sup> 또한 LLM의 학습과정은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계산과 대규모의 분산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sup>7)</sup> 이와 같은 이유에서 LLM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컴퓨팅 파워와 고성능 반도체가 요구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동 방법의 주요내용 검토에 앞서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징에 기반하여 현행 법률·행정법규 등으로 규율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Ⅱ.), 동 방법의 세부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의 생성형 AI 규제안의 특징 밝혀 그 배경을 분석한다(Ⅲ.). 규제안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 강화의 측면에서 중국의 관련 입법동향 분석을 통해 그 흐름을 이해하고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를 살펴봄(Ⅳ.), 중국이 처한 국가경쟁력 위기 대응 측면에서 동 방법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법과 정책의 연계측면에서 검토한다(Ⅴ.), 마지막으로 우리가 AI 관련 입법·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국의 대응이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Ⅵ.).

> 해당 로앤비 학회논문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LAWnB Legal Essential Report Vol.22

## LAWnB IP Exclusive Report:

### 2023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

투스너로이터코리아

2023.10.24

---

**COPYRIGHT© THOMSON REUTERS. ALL RIGHTS RESERVED.**

2023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 LAWnB IP Exclusive Report 는 로앤비의 [로펌 리포트], [학회논문], [세계법제동향] 및 [유럽법제동향] 콘텐츠를 엮어 발행하였습니다. 로펌리포트는 각 로펌의 동의 하에 본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전제 및 상업적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LAWnB Legal Essential Report Vol.22**

LAWnB IP Exclusive Report: 2023 Domestic and International AI Regulatory and Policy Trends

Thomson Reuters

[www.lawnb.com](http://www.lawnb.com)